

[별표 3] <개정 2003.12.3, 2006.2.3>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방법(제30조제3항관련)

1.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방법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

| 구 분                | 오염물질    | 산 정 방 법                                                                   |
|--------------------|---------|---------------------------------------------------------------------------|
| 일 반 오 염<br>물 질     | 황 산 화 물 | $\text{일일유량} \times \text{협의기준초과농도} \times 10^{-6} \times 64 \div 22.4$   |
|                    | 먼 지     | $\text{일일유량} \times \text{협의기준초과농도} \times 10^{-6}$                       |
|                    | 암 모 니 아 | $\text{일일유량} \times \text{협의기준초과농도} \times 10^{-6} \times 17 \div 22.4$   |
|                    | 황 화 수 소 | $\text{일일유량} \times \text{협의기준초과농도} \times 10^{-6} \times 34 \div 22.4$   |
|                    | 이황화탄소   | $\text{일일유량} \times \text{협의기준초과농도} \times 10^{-6} \times 76 \div 22.4$   |
| 특 정 대 기<br>유 해 물 질 | 불소화합물   | $\text{일일유량} \times \text{협의기준초과농도} \times 10^{-6} \times 19 \div 22.4$   |
|                    | 염 화 수 소 | $\text{일일유량} \times \text{협의기준초과농도} \times 10^{-6} \times 36.5 \div 22.4$ |
|                    | 염 소     | $\text{일일유량} \times \text{협의기준초과농도} \times 10^{-6} \times 71 \div 22.4$   |
|                    | 시안화수소   | $\text{일일유량} \times \text{협의기준초과농도} \times 10^{-6} \times 27 \div 22.4$   |

비 고

1. 협의기준초과농도=배출농도-협의기준농도
2. 배출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의 농도를 배출농도로 본다.
3.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계산하고, 일반오염물질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4. 먼지의 배출농도의 단위는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 $\text{mg}/\text{m}^3$ )으로 하고,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의 단위는 피피엠(PPM)으로 한다.

나.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                                                                        |
|------------------------------------------------------------------------|
| $\text{일일기준초과배출량} = \text{일일유량} \times \text{협의기준초과농도} \times 10^{-6}$ |
|------------------------------------------------------------------------|

비 고

1. 협의기준초과농도=배출농도-협의기준농도
2.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배출농도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의 농도를 배출농도로 보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배출농도가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배출농도로 본다.

3.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계산하고, 일반오염물질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4.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대상시설의 경우

$$\text{일일기준초과배출량} = \text{일일유량} \times \text{협의기준초과농도} \times 10^{-6}$$

비 고

1. 협의기준초과농도=배출농도-협의기준농도

2.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배출농도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농도를 배출농도로 본다.

3.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배출농도가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농도를 배출농도로 본다

4.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5.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2. 일일유량의 산정방법

$$\text{일일유량} = \text{측정유량} \times \text{일일조업시간}$$

비 고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 시간당 세제곱미터(m<sup>3</sup>/HR)로 하고, 그 밖의 대상시설의 경우 분당 리터(l/min)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시간으로 표시하고, 그 밖의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단위로 표시한다.